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 송 민 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금융, 의료,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이용가치 증가와 함께 보호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동의 제도, 정보주체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 등의 통제권한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사전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양과 빈도를 고려하면,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 상태의 도달·유지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또한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 상태의 도달·유지는 과도한 준수비용을 초래하여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라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오프라인에서만 취급되는 개인정보에 비해 그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은 차별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및 정책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 론 / 2

II.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및 정책 현황 / 3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현황 / 3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 / 5

III.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 / 7

1.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 / 7
2.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현황과 문제점 / 11

IV. 시사점 및 결론 / 1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원, (043)531-4254, sminsun@kisdi.re.kr

I.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이 더해진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금융, 의료,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이용가치 증가와 함께 보호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데이터 분석의 원천이 되는 정보는 비즈니스 가치가 크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경우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박유리 외, 2015. 11). 과거에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단편적인 개인정보 침해나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대량 처리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ICT기술의 발전, 방송통신융합, 모바일 및 소셜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정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환경 조성’과 함께 병렬적인 규범적 보호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은 온전한 개인정보 보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대등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규범인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은 개인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빈도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동의 제도, 정보주체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 등의 통제권한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할 사전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양과 빈도를 고려하면,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 상태의 도달·유지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또한 완전한 개인정보 보호 상태의 도달·유지는 과도한 준수비용을 초래하여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라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오프라인에서만 취급되는 개인정보에 비해 그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은 차별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및 정책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및 정책 현황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현황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심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 및 민간영역을 망라하는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규율에 관해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분야별로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 규율되던 기존의 법집행 체계에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하에 개별법이 운영되는 ‘계층적 법률 체계’로 변화되었다(박유리 외, 2015. 11).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정보통신, 금융/신용, 의료, 교육 등 개별분야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존재한다(〈표-1〉 참고).

<표-1>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 현황

분야		주요 법률	기타 관련 법률
공공부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국세기본법 통계법 주민등록법 등
민간 부분	정보 통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등
	전자 상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금융 신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보건 의료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약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기타	영업 비밀	형법(제127조, 제316조 제2항, 제317조), 변호사법, 세무사법, 법무사법, 공증인법 등	

자료: 박유리 외(2015.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동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 규제대상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었고, 보호대상도 근로자 정보 등 개별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정보들까지 포섭하게 되어 법적용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 및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2014. 8. 7 시행),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2016. 1. 1 시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2016. 7. 25 시행),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강화(2016. 9. 30 시행) 등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매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공공기관,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각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개인정보 보호 조치 현황 및 안전성 확보 현황, 개인정보 처리자 및 정보주체의 정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 및 업종,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인지도 및 인식 수준 등을 매년 파악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12).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8년부터 각급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와 침해사고 예방 및 보호 활동 등을 진단·측정하고, 문제점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진단결과를 정부업무평가, 지자체합동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기관 별로 수립한 개선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함께 실시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4. 12. 26).

그밖에도 범정부 차원으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14.7월)이 수립되어 이행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관리제도를 개선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 보호 투자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의 지속적인 추

진과 병행하여 새로운 분야에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지속적인 실태점검(웹사이트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 및 제재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2016년 6월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에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받은 처리목적 범위 내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은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사용자를 탐지하고 사물 간 자동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대안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를 거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기준을 마련하였다(전승재 외, 2016. 11. 21).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법정계획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12~'14년)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 제2차 기본계획('15~'17년)은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량강화와 능동적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¹⁾ 2018년 시행예정인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18~'20년)은 정보주체의 능동적인 개인정보 관리 및 생활화 지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규제 정립 및 지원체계 마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 등을

1) 제2차('15~'17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① 거버넌스 구조 선진화(법체계정비/신산업발전을 위한 보호기준 합리화), ② 보호관리체계 강화(PIPL 인증제운용), ③ 보호 실천문화 조성(침해예보제 운영), ④ 선순환 생태계 조성(개인정보 보호 전문 R&D 센터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나성현, 2015. 8. 13).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Ⅲ.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

1.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현황

1985년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산망법)을 대체하여 199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1997년 무렵 2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완료되자 전산망법은 사실상 그 법률의 목적을 다하게 되어 고도화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이다. 당시 사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적 미비를 시정하고자 했으나, 법률이 갖는 한계로 인해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쳤다. 이후 사적 부문에서의 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로 전면 개정되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규율, 스팸이나 해킹·바이러스와 같은 정보화 부작용의 해결 외에도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데이터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에 규율되어 있던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라 야기되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정보로부터의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에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국한하여 규율하였다. 2011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공과 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민간영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오병철, 2016. 12).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정보통신망법은 적용대상인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를 넓게 정의²⁾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리목적의 온라인 서비스 상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한 장(제4장)을 할애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리·파기 등에 관한 의무와 동의철회권, 열람·제공·정정 요구권 등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과징금, 벌칙,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도,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제도,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금지 등 정보통신망에서 특히 문제되는 상황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있다.

최근 통신사, 금융기관,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해 2016년 3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단행하였다(〈표-2〉 참고). 우선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여,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얻고자 할 경우 필수적 항목과 선택적 항목을 구분하여 각각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동법 제22조의2).³⁾ 또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문서로써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교육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취급 업무의 동의 없는 재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동법 제25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 이는 불법적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3) 선택적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된다(동법 제22조의2제2항).

함이다. 그밖에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을 법상에 특정하여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동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표-2> 정보통신망법 개정('16. 3. 2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내용

조문	개정사항	위반시 처벌	시행일
제22조의2 신설 제76조제1항 제1호 개정, 제1의2호 신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 필요시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7.3.23
제24조의2 제3항등 개정	법률 간 유사용어 조정 정보통신망법의 “취급·누출·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처리·유출·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조정	-	'16.9.23
제25조제4항 개정 제25조제6항등 신설	개인정보 처리위탁제 개선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 부여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재위탁 가능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 위탁자가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16.9.23
제27조제4항 신설 제69조의2제2 항 신설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법 위반 사항 발견시 개선조치 후 대표자에게 보고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임원에게 징계 권고	-	'16.9.23

조문	개정사항	위반시 처벌	시행일
제32조의3 신설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조치 강화	※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시정조치 명령 후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6.9.23
	웹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KISA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		
제32조의3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16.7.25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		
제44조의7 제1항제6의2호 신설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 등 조치 강화 불법정보의 범위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명시적으로 포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게시물 삭제 등 방통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9.23
제49조의2 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 조치 근거 마련 미래부, 방통위, KISA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사기성 정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 미래부, 방통위는 위의 조치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정보공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제50조제1항 제2호 개정	텔레마케팅(TM)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TM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해야만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TM 가능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도 없는 경우	'16.9.23
제63조 개정 제64조의3 제1항제8호 신설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구체화 및 처벌 강화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 포함), 처리위탁, 보관으로 구분하고 제공은 동의 필요, 처리위탁, 보관은 고지로 같음		
제75조의2 신설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 도입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	-	'16.9.23

조문	개정사항	위반시 처벌	시행일
제76조제1항 제12호 개정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망법 위반 전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로 확대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6.9.23

2.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현황과 문제점

(1)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의 현황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⁴⁾ 정보통신망에서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환경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과 규모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2016년도 개인정보 침해신고 건수는 총 98,210건으로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 관한 침해신고가 48,557건으로 가장 많았다(전체의 49.4%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침해신고가 3,141건,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2,731건으로 많이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지속('12년 139,724건 → '13년 129,103건 → '14년 83,126 → '15년 77,598건 → '16년 48,557건)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스마트 기기 및 서비스(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맞춤형 광고 등)의 확산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7).

4) '개인정보의 침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작위·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표-3〉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신고 현황

[단위 : 건]

침해 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3,507	2,634	3,923	2,442	2,568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396	84	268	65	5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847	1,139	1,200	868	390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2,196	1,988	2,242	3,585	3,141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941	1,022	1,036	857	622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125	44	40	22	25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44	47	54	41	4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48	51	39	48	123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누출 등	3,855	4,518	7,404	4,006	2,731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779	602	686	767	545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717	674	792	957	855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660	510	352	381	286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47	36	33	34	33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139,724	129,103	83,126	77,598	48,557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신용정보침해 등)	12,915	35,284	57,705	60,480	38,239
합계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7)

정보화 사회의 발전 및 고도화로 인해 정보의 급속한 유통 및 확산이 가능해지면서 금융기관, 온라인 쇼핑몰, 포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명의도용, 피싱, 신분증 위조 등 추가적인 피해도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1). 지난 2008년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의 전면 개편 이후 9년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억7572만 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16). 유출정보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용정보 유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4〉 주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

연도	유출업체 수(개)	피해 규모(만 건)
2008년	2	2,988
2009년	1	9
2010년	3	3,950
2011년	4	5,032
2012년	2	1,295
2013년	5	19
2014년	73	2,853
2015년	13	323
2016년	19	1,103
합 계	122	17,57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6)

(2)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문제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사전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고부가가치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과 융합된 서비스는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단계 및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및 활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사전에 동의받는 것이 쉽지 않아 서비스 품질 약화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전동의 원칙을 일관적으로 강화할수록 동의제도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76.8%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및 약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

는 69.8%가 확인하지 않는(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12) 등 사전동의 제도의 형식화가 문제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응답은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33.9%),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2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12). 정보주체의 동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유의지로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인 경우가 많아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실상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되는 것이 현실이다(오병철, 2016. 12). 또한 복잡한 사전고지 내용 및 항목으로 인해 내용에 대한 자세한 확인 없이 동의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행 개인정보의 동의기반 활용원칙은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의 개입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분석을 통한 유용한 정보 생성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전제하였던 컴퓨터,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사회에서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초연결 사회로 발전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물인터넷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한 개인식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등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과거와는 차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다량의 비정형데이터들이 각종 사물에 달린 센서를 통해 자동화·기계화된 방법으로 실시간 정보가 수집·처리되는 환경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웹 환경에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인적사항 등에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박유리 외, 2015. 11).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의 자율적인 정보 수집에 따라 수집, 저장, 활용되는 데이터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나성현, 2015. 8. 13). 따라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시사점 및 결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스마트기기 및 융·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더해진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유통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국외이전 규정은 시장 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6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간 정합성을 맞추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고려하여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6. 12. 6).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7년 3월 8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본 개정안에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사유로 추가하였다.⁵⁾ 또한 ‘기존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능을 추가하는 서비스 개선’은 수집·이용 목적의 변경으로 보지 않아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7. 4. 3).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예외적으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후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처리정지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글로벌

5)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가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비즈니스의 확대에 의해 한번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이전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국외이전이나 재이전이 이루어져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외(재)이전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6. 12. 6).

한편,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원칙과 조치방법을 제시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행태정보의 수집·이용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안 마련, ②최소한의 행태정보 수집, ③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 획득, ④행태정보의 제공 및 온라인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 수단과 이용방법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7. 2).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도입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후적이고 대응적인 대책마련보다는 객관적이며 증명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근본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형식적 사전규제의 강화가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행태 및 객관적인 실증자료에 기초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제도를 식별하고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자원인 개인정보의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나성현(2015. 8. 13),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KISDI Premium Report, 15-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유리 외(2015. 11), “인터넷 경제 시대의 정책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37.
- 방송통신위원회(2016), “개인정보 유출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2016. 12. 6), “방통위,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7),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7. 2),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방송통신위원회(2017. 4. 3), “CPO 대상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간담회 자료”.
- 오병철(2016. 12), “IoT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NAVER Privacy White Paper.
- 전승재·주문호·권현영(2016. 11. 2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12), “2016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2017. 1),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KISA-2016-0053.
- 행정자치부(2014. 12. 26), “개인정보보호 관리 잘 한 기관에 특허청·전남도·대구도공 -’14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 발표 -”, 보도자료.